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	----

신고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상호)

제조장 소재지

제조 종류 홍삼 [] 태극삼 [] 흑삼 [] 백삼 [] 인삼제품류 []
(품목기재)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내역서 1부(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인삼제품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수수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삼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삼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삼담당부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삼담당부서)		